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 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기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1. 17.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관세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신설>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관세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지역	국가
1.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2.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3.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4. 아메리카	아이티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0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4.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5.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2년 12월 1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연 락 처	(044) 215 - 4461